

함께 지켜요!

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



일상생활에서



- ☑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- ☑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
- ☑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 가리기
- ☑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

코로나19 감염 시



- ☑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
- ☑ 불필요한 만남 자제
- ☑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,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가능
- ☑ 회사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 제공

고위험군



- ☑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
- ☑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 자제
- ☑ 발열,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방문

의료기관·감염취약시설



- ☑ 종사자·보호자·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
- ☑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
- ☑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

· 코로나19치료제 담당약국·의료기관용 ·

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안내

- 추진방향**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,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
- 처방대상** 코로나19 고위험군(처방대상 변동없음)
- 시행일자** 2024년 5월 1일 0시부터
- 부과금액** 5만원(1명분 비용, 치료제 3종 동일 금액)
* 단, “의료급여 수급권자” 또는 건강보험 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”는 무상지원 유지

업무 절차 (5월 1일 0시부터 실시)

1 본인부담금 유/무상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수령 후 치료제 교부

- *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유/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
- (유상) 5만원 (1명분, 치료제 3종 동일 금액) 수령 / (무상) 무상 지원



대상자		본인부담금('24.5.1.~)
건강보험 가입자	일반 환자	5만원(유상)
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	0원(무상)
의료급여 수급권자	1종	
	2종	

* 의료급여 수급권자(1, 2종),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해당함

2 유상/무상 구분하여 처방전 별도보관(추후 반환금액 확정시 증빙자료로 필요)

3 사용량(유상/무상) 시스템 입력(비고란에 무상 지원 내용 입력)

● 사용관리

사용내역 | 공급내역

기준기간: 2024-07-26 ~ 2024-08-26 | 2주일 | 1개월 | 2개월

치료제: 락소로비드(30정) | 사용기관: 기관명 | 지역: 전체 | 전체

현재전수: 총 75,263 건

필수사항 시, 비교란에 처방전번호 / 유상 / 환자 성 / 요양기관번호 / 교부번호 기재

치료제 사용내역 목록	사용기관명	시도코드	시도명	진단제고량	인고량	진행량	사용량	무상사용량	유상사용량	본인부담금 기준인원(명)	영양군보건소	결정량	비고(작성요령 참조, 줄 바꾸기(shift+enter))	
중앙대학교병원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4	0	0	1	0	1	1	1	0	0	유상 1명	
서울대학교병원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1	0	0	0	0	0	0	0	1	6	12	평환제고 0
가톨릭대학교 문명성모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7	0	0	0	0	0	0	0	7	18	0	
경희대학교병원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12	0	0	1	0	1	1	1	11	0	0	
경향병원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11	0	0	0	0	0	0	0	11	20	0	
보라더병원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2	8	0	0	0	0	0	0	8	0	0	
연세대학교의료재단 경	648903670	락소로비드(30정)	5	0	0	1	0	1	1	1	4	0	0	유상 1명(1box) 이영* 20130112

- * (유상지원 대상자) 유상사용량, 본인부담금 기준인원(명) 입력
- * (무상지원 대상자) 사용량 입력 + 비교란에 처방전에 있는 ①날짜, ②구분(무상), ③성, ④요양기관번호, ⑤교부번호 작성 **必**
(작성 예시 : (5.1) 무상(1) / 김** / 311****/27호)
 - ✓무상 : 종별이 의료급여,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, 치료제 무상제공 대상
 - ✓유상 : 종별이 건강보험, 무상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, 본인부담금 수령 대상

4 분기별 정산 진행

- ①사용량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청이 반환금액 초안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안내 → ②담당기관에서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(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부여 예정,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) → ③건강보험공단이 담당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징수

- 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

*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안내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꼭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만 처방 해 주세요!



1. 처방 대상자

- ☑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증상 고위험군 (60세 이상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)

[처방 대상자 기준]

처방기준	처방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상발생 후 5일 이내(무증상자 제외) •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	60세 이상
	기저질환자*
	면역저하자*

*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자는 12세 이상(팍스로비드) 또는 18세 이상(라게브리오) 가능

2. 처방 시 유의사항

- 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반드시 지정된 **고위험군 대상자**에게만 처방해야 합니다.
- ☑ 처방시 환자가 지정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**정확히 확인**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☑ 처방시 **환자의 복용 의사**를 꼭 확인하신 후에 **처방**해야 합니다.

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?

☀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, 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제인 **항바이러스제(팍스로비드, 라게브리오)**를 의미합니다.

☀ 아래에 해당하는 **코로나19 환자**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,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**먹는 치료제**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.



<p>60세 이상 어르신</p> <p>60세</p>	<p>12세(혹은 18세) ~ 59세 면역저하자</p>	<p>12세(혹은 18세) ~ 59세 기저질환자</p> <p>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신경 발달장애 고혈압 당뇨 비만 (BMI 30kg/m² 이상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